

의안번호	2211357
의 퇴 인	박찬대의원
회 답 일	2025.7.23.
추계번호	25D3690

12.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기념행사를 매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억 300만원, 2029년 2억 1,6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억 4,300만원(연평균 2억 86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회의참석수당 (안 제19조)	3	—	—	—	—	3	0.6
기념행사 (안 제30조제1항)	200	204	208	212	216	1,040	208
합계	203	204	208	212	216	1,043	208.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조(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)	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(이하 “특별재판부후보자”라 함)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함)를 두며(제1항),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30조(기념사업의 실시)	국가는 12.3 비상계엄에 대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한 국민의 민주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하여 목석 설치 등의 기념사업(이하 “기념사업”이라 함)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3		국가는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32조(내란 및 외환의 죄 범죄인 소속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한 및 반환)	국가는 「형법」 제87조제1호 및 제2호, 제88조 내지 제90조, 제92조 내지 제103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「정치자금법」 및 「정당법」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(제1항)	의무규정
		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(제2항),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을 산정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, 정당이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9조(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)	○	—
2	안 제30조(기념사업의 실시)	○ (기념사업)	—
3		× (지자체 지원)	지방자치단체의 기념행사 수행 여부를 현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
4	안 제32조(내란 및 외환의 죄 범죄인 소속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한 및 반환)	×	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현시점에서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함)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(안 제19조)과 국가 주관 기념사업 비용(안 제30조제1항)을 합산하여 추계함

□ 안 제19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추가재정소요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, 추천위원회 회의는 1회 개최되고 회의참석수당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

- 안 제19조¹⁾는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와 특별재판부(1심, 2심)를 구성할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함
 - － 추천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국회·법원 판사회의·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함
- 대법원에 따르면,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되었으며,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별로 회의횟수는 각 1회임

[표 2]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명, 회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합계
대법관 후보자	2	2	1	1	3	9
회의횟수	2	2	1	1	3	9

자료: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또한, 대법원은 「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」²⁾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외부 민간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, 그 단가는 회의참석 1회당 350,000원임

1) 「12.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」

제19조(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) ①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(이하 “특별재판부후보자”라 한다)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.

1. 국회가 추천한 3명(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각 교섭단체, 그리고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다.)

2. 「법원조직법」 제9조의2에 따른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

3.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

2) 「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」

제2조(참석수당) ① 대법원(법원행정처, 사법연수원, 사법정책연구원, 법원공무원교육원, 법원도서관 포함)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(연구반, TFT 등 포함, 이하 같다)에 참석한 위원(연구반원, TFT팀원 등 포함, 이하 같다)에 대하여는 1일당 150,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·회의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,000원 이내의 안전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- 안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가재정소요는 행사의 성격상 유사성이 있는 국회 제헌절 기념행사 예산을 참고하여 추계함
 - 국회사무처에 따르면, 제헌절 기념행사는 「대한민국헌법」을 제정·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로서, 2025년 기준 예산은 2억원임

[표 3] 국회 제헌절 기념행사 예산내역: 2021~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
예산액	150	150	150	150	200

자료: 국회사무처

- 안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제32조의 국고보조금 제한에 따른 국가재정 변동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
 - 지방자치단체 지원: 지방자치단체의 기념행사 수행 여부를 현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
 - 국고보조금 제한: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현시점에서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-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(안 제19조)

- 제정안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(9명)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
- 추계결과, 제정안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만 발생하며 3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명, 회, 백만원)

구분	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회의참석수당 (안 제19조)	위원정수	9	-	-	-	-	-	-
	회의횟수	1	-	-	-	-	-	-
	회의참석수당	0.35	-	-	-	-	-	-
	추가재정소요	3	-	-	-	-	3	0.6

주: 본 추계는 추천위원회의 회의횟수를 1회, 회의참석수당을 35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임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기념사업의 실시(안 제30조제1항)

- 제정안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기준 국회 제헌절 기념행사 예산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³⁾을 적용하여 추계함
- 추계결과, 제정안에 따라 매년 비상계엄에 대항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한 국민의 민주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

[표 5] 기념행사의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기념행사 (안 제30조제1항)	200	204	208	212	216	1,040	20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기념행사를 매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억 300만원, 2029년 2억 1,6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억 4,300만원(연평균 2억 860만원)으로 추계됨

3)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 3. 경제전망 기준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	1.9%	2.0%	2.0%	2.0%	2.0%	2.0%	2.0%

[표 6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회의참석수당 (안 제19조)	3	-	-	-	-	3	0.6
기념행사 (안 제30조제1항)	200	204	208	212	216	1,040	208
합계	203	204	208	212	216	1,043	208.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사례와 국회 제헌절 기념행사 예산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제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assembly.go.kr